「청빙위원회 안내문」(2026. 11. 4.)에 대한

답변드립니다
— 기록으로 확인해 주세요

청빙위원회가 성도들께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 이 안내문으로 노회 질의 공문 번호(삼일교회 2026-227)와 노회 회신(평양제일 199-5)이 처음 알려졌습니다. 다만 안내문은 **제기된 문제의 핵심에 답하지 않았고, 사실과 다른 부분**도 있습니다. 양쪽 설명을 함께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, 안내문의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.

청빙위원회 안내문		이 답변서
노회 회신을 근거로 "적법"	⇄	당회록·정관·법규집·헌법으로 확인

1 **노회의 '치유' 논리는 사임 문제에만 맞습니다**

정원 미달(13인)은 원인이 없어진 적도, 당회록에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.

2 **"세칙 부재"? — 규정은 법규집에 있었습니다**

청빙위원회 운영규정, 위원 15~20인, 2025. 6. 22. 시행. 안내문은 이 규정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

3 **선관위 규정은 정관이 직접 지정한 규정입니다**

"적용 안 된다"면 참여회원 4,590명은 정관이 정한 방법 없이 확정된 것이 됩니다.

4 **"이의 제기는 없었다"? — 투표 중에도 있었습니다**

11. 1. 09:19, 13:20 청빙위원장께 문제 자료가 직접 전달되었습니다.

5 **날인은 협조가 아니라 각자의 승낙입니다**

모두 해야 하는 것이라면 '과반수'라는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.

1 추인과 치유 — 노회의 논리로도 정원 문제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

안내문 노회는 사면 수리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무효 원인이 소멸하였고, 그 뒤 당회가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회신하였다. (199-5 가항)

노회가 든 근거는 민법 제139조 단서와 대법원 판례입니다. 노회 스스로 **순서가 중요하다**고 밝혔습니다.

> **"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"**
> 평양제일노회 회신 199-5 가항

① 흠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› **② 원인 소멸** 원인이 먼저 없어지고 › **③ 알고 추인** 무엇이 하자인지 알고 추인 = **치유** 새 적법 행위

이 잣대를 두 흠결에 **똑같이** 대어 보면:

노회의 기준	사임·파송 전 청빙 진행	청빙위원회 정원 미달 (13인)
② 원인 소멸	✓ 있음 8. 24. 노회가 사면 수리·임시당회장 파송	× 없음 위원 추가 선임도, 규정 개정도 없이 **11. 1.까지 13인 그대로**
③ 알고 추인	✓ 있음 9. 13. 당회록에 "사임도, 파송도 없이 진행" 기록 후 추인	× 없음 9. 13. 당회록에 정원 문제는 **언급조차 없음**

노회 논리상 '치유' 주장 여지 | **노회 논리로도 치유 안 됨**

+ 청빙위원회는 "보조 기관"일 뿐인가요?

안내문 청빙위원회는 당회의 결의를 돕는 한시적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. (199-5 가항)

삼일교회 정관 정관 제10조 제2항

공동의회는 청빙위원회의 추천인 중에서 … 담임목사를 청빙한다.

정관은 **청빙위원회의 추천을 필수 단계**로 정했습니다.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는 교회 규정이 정합니다. "보조 기관"이라는 말로 규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.

2 "세칙이 부재"? — 규정은 법규집에 있었습니다

안내문 노회는 '세칙이 부재한 상황'이라는 전제 아래, 3월 22일 당회가 정한 구성 방식을 자치권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보았다. (199-5 다항)

법규집 134~139쪽

청빙위원회 운영규정

제2조② 청빙의 과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조② 위원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…
부칙 이 규정은 2025.6.22.부터 시행한다.

규정

15 ↑

2024년 1차 위원회
성도 14인 포함 18인

2026년 재구성

13

'당회원 전원'만
의결권
성도 대표 6인은
자문

안내문도 노회 판단이 **"세칙 부재라는 전제"** 위에 있다고 적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제가 사실과 다릅니다. 3월 22일 결의는 규정을 **개정한 것이 아니며**, 법규집의 규정은 지금도 15~20인입니다. 안내문은 이 규정에 대해 **한 마디도** 하지 않았습니다.

> **"내규에 어긋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…"**
> 노회 회신 199-5 다항 — 노회도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

? 당회가 노회에 보낸 질의 공문(2026-227)을 공개해 주십시오
노회가 '세칙 부재'로 판단한 것을 보면, 질의 공문에 운영규정이 정확히 알려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3 임시당회장의 권한 — 공문은 "청빙에 한해"였습니다

안내문 후임 청빙과 은퇴 예우는 연결된 사안이므로 임시당회장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. (199-5 나항)

노회 공문 198-41

임시당회장 파송 공문 (2026. 8. 24.)

임시당회장은 후임 담임(위임)목사의 청빙에 한해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 주재한다.

11. 1. 공동의회
안건 ① 6대 담임목사 청빙
안건 ② 5대 담임목사 은퇴 예우

서로 다른 **두 안건**으로 따로 표결

노회 회신은 공문의 **'한정' 문언을 사후에 넓혀** 해석한 것입니다. 그 해석을 존중하더라도, 처음 공문이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은 성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.

4 선거관리위원회 — 정관이 직접 지정한 규정입니다

안내문 임직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번 청빙 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, 60일 전까지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자로 보기 어렵다.

문제는 '60일'만이 아닙니다. **선관위 자체가 없었고**, 의결권자 명부 확정은 임시당회장과 서기 **2인**에게 맡겨졌습니다(9. 13. 당회록).

정관 제31조 ③
참여의사 표시 기간·방법은
"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"

→

선관위 운영규정
제15조③ "공동의회 참여의사를 표한 자"
제2조 "교회 주관 선거"

→

참여회원 4,590명
성립·가결의 기준
(정관 제31·32조)

규정이 적용된다면 →
선관위 미구성, 60일 전 구성·14일 전 명부 작성 모두 위반

적용되지 않는다면 →
정관이 요구한 '규정에 따른 기간·방법'이 아예 없었던 것. 4,590명은 근거 없이 확정

어느 쪽이든 정관 제31조 제3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

당회는 이번 공동의회를 **"임직자 선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투표 방식"**으로 치르기로 결의했고, 당일 참여율을 '2024 임직자 선거'와 나란히 비교해 띄웠습니다. 방식과 시스템은 그대로 쓰면서,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한 **기구만 건너뛴 것**입니다.

5 "이의 제기는 없었다"? — 투표 중에도 있었습니다

안내문 개회부터 폐회까지 회의 중 이의 제기는 없었으므로 연기를 권고하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.

09:00 모바일 투표 시작 (각자 다른 시간에 투표)

09:19 청빙위원장께 **선관위 규정 위반 자료** 전달

13:20 청빙위원장께 **노회 회신 반박 자료** 전달

18:00 투표 종료 답 없이 가결 선포

찬성 2,758 (70.29%) | 반대 988 (25.18%) | 기권

> **"3분의 2가 가(可)라 할지라도 부(否)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."**
> 총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 — 4명 중 1명 반대 + 문서로 전달된 이의 = 이 조항이 말하는 상황

"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"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. 그렇다면 헌법 제15장 제6조대로 노회 제출 경과에 **"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"**을 그대로 적어 주십시오.

6 청빙서 날인 — 협조가 아니라 각자의 승낙입니다

안내문 청빙서 날인은 노회에 청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, 무흠 입교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.

헌법이 청빙서에 **"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"**을 요구하는 것은, 날인이 서류 작업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**승낙**이기 때문입니다.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'과반수' 요건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.

공동의회 회원	필요한 날인	찬성표
8,763	4,382	2,758
무흠 입교인	과반수	모두 날인해도

찬성 2,758 — **부족 1,624명 — 찬성하지 않았거나 투표하지 않은 성도의 이름이 필요** — 4,382

✓ 당회와 청빙위원회께 요청드립니다

1. 노회에 보낸 **질의 공문(삼일교회 2026-227) 전문을 공개**해 주십시오.
2. 운영규정(15~20인)이 있었는데도 **13인으로 진행한 이유**를 성도들께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.
3. 날인 전에 **당회가 기록한 흠결과 제기된 문제를 함께 안내**하고, 진·목장·부서 단위 일괄 날인이나 권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.
4. 노회 제출 경과에 **반대자의 수와 형편, 제기된 이의를 그대로 기록**해 주십시오.
5. 같은 후보라도 **규정대로 청빙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절차를 다시 밟는 길**을 검토해 주십시오.

투표는 무기명이었지만, 날인은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.

누구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, 교회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. 양쪽의 설명을 모두 보시고, 기도하며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.

휴대폰 카메라로 비춰 보세요

정리 사이트
문제점·근거 자료·Q&A를 출처와 함께 한곳에

소식방
새로 확인된 기록과 진행 상황을 받아 보기

1:1 문의
궁금한 점·의견·제보는 누구든 편하게